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전기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성환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,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사단법인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하는 「전기산업발전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21469호, 2026.3.17. 제정·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“협회”를 “대한전기산업연합회”로 변경(안 제4조제9항제1호, 안 제12조 제1항제1호, 안 제17조, 안 제18조, 안 제19조, 안 제20조제1항 개정)

나. “협회”의 “연합회” 설립인가 관련 경과규정 신설(안 부칙 제2조 신설)

- 「전기산업발전기본법」 부칙 제2조에 따라 “협회”가 총회를 거쳐 “연합회” 설립을 신청하면, 승 제18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의 정관 작성 등은 간주하도록 규정할 필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2026. 3. 30. ~ 5. 11.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9항제1호 중 “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”를 “대한전기산업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.)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연합회

제17조의 제목 “(협회의 정관기재사항)”을 “(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협회”를 각각 “연합회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)”을 “(연합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3항 및 제4항 중 “협회”를 각각 “연합회”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협회의 감독)”을 “(연합회의 감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협회”를 “연합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협회의”를 “연합회의”로, “협회에”를 “연합회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협회”를 “연합회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협회”를 “연합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한전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연합회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⑧ (생략)		제4조(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		
⑨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		⑨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		1. ----- 설립된 대한전기산업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.)		
2. ~ 5. (생략)		2. ~ 5. (현행과 같음)		
제12조(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,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		제12조(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협회		1. 연합회		
2. ~ 4. (생략)		2. ~ 4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제17조(협회의 정관기재사항)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		제17조(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) ① <u>연합회</u> -----		
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10. (생략)

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18조(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)

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·단체의 장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,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협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.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 사항 중 협회의 명칭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
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연합회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연합회 설립의 인가절차

등) ① ----- 연합회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연합회-----

-----.

④ -----

연합회-----

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제19조(협회의 감독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.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.

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입·지출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20조(업무의 위탁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.

제19조(연합회의 감독) ① -----
----- 연합회 -----
-----.

② ----- 연합회의 -----
-- 연합회에 -----

--.

③ 연합회 -----

-----.

제20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

----- 연합회 -----

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895